

『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6월 19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6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6월 30일

제1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신 영 근

나. 제안이유

- 「하수도법」과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하수도법」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·공포되었으므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·정비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지정(안 제2조)
- 사용개시 등의 신고기간을 종전 20일에서 30일로 연장(안 제3조)

-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5조)
- 현행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던 것을 사용자가 필요로 할 경우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가 설치토록 할 수 있도록 완화(안 제13조)
- 「하수도법」 제61조제1항에 따른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규정(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)
- 「하수도법」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를 수집·운반하거나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관련 조항 신설(안 제21조)
- 사용료, 점용료, 수수료,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(안 제24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하수도법」, 「하수도법 시행령」,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「하수도법」과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2006. 9. 27 「하수도법」으로 통합되고,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어 일부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로 제정됨.
- 이에 「구미시 오수·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」가 폐지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「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」에 통합하였으며,

상위법에서 위임한 규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· 정비하려는
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하수처리구역의 명확한 지정(신설)
 -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(안 제2조)
-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기간 연장
 - 종전 20일 ⇒ 30일(안 제3조)
- 하수관거의 준설기준 강화
 - 종전(2년에 1회) ⇒ 변경(매년 1회 이상)(안 제5조)
- 하수배출량 계측장치 의무 설치규정 완화
 - 종전(의무적 설치) ⇒ 변경(사용자 필요시 설치)(안 제13조)
-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규정 완화
 - 종전(건축물 착공때 부과) ⇒ 변경(준공 전 부과)
(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)
- 감면 대상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
 - 사용료, 점용료,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 감면대상 명시
(안 제24조)
-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가산금 요율 변경
 - 종전(1개월 경과시 5%) ⇒ 변경(1개월 경과시 3%)(안 제26조)
- 과태료 규정(신설)
 - 공공하수도에 관한 신고의무 및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
50만원 이하, 또는 사용료, 점용료, 수수료 등을 거짓으로 회피
했을때 징수금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
규정을 신설함(안 제30조)

○ 검토 결과는

- 「하수도법」과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「하수도법」으로 통합되고, 「구미시 오수·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」가 폐지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「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와 통합한 것으로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